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나91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나917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516454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변론 종결 2017. 5. 24.

판결 선고 2017. 6. 1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가단516454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B 도로 694㎡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1964. 1. 6. 접수 제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C 도로 1,326㎡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1964. 1. 6. 접수 제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미리

판사조윤정

판사하세용